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9도10758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강○○ (○○○○○○○-○○○○○○○○○), 학원강사  
주거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8. 선고 2009노1941 판결  
판 결 선 고 2010. 5.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